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3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에 대한 책무 (안 제3조)

나.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 사업 명시 (안 제4조)

다. 아동복지사업 경비 지원 (안 제5조)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교통편의 증진, 안전체험 활동,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문화·체육활동 사업 등

라.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 (안 제6조~제7조)

마.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증진 기여자 포상 근거 (안 제8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의 효율적 운영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13.. ~ 2024.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181호, 가족복지과-5895(2024. 8. 13.)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2229(2024. 8. 5.)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2229(2024. 8. 5.)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5710(2024. 8. 12.)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4394(2024. 9. 13.)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
2. 아동의 정서함양 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안전·건강에 대한 사업
4.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
5.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또는 사업
2. 아동 교통편의 증진 사업
3. 어린이 안전체험 활동
4.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
5. 아동의 문화·체육 활동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

하거나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4.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8조(포상) ① 군수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과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연락처	(033) 330 - 2124